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강남구 개포동 158 일대 ○내 용 · 용도지역변경 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(16,700㎡) · 용도지구지정 : 도시설계지구(16,700㎡) ·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강남구 개포동 158 일대 16,700㎡의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강남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개포생활권 중심지로 정하고, ○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, 아울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은 이 지역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역변경이며 지구지정안으로 사료되어, ○시에서 제출한 (안)에 대하여 각각 동의 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(지정)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80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광장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 ○내 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등 급</th> <th>류 별</th> <th>폭원(m)</th> <th>연장(m)</th> <th>시 점</th> <th>종 점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변 경</td> <td>대 로</td> <td>1류</td> <td>35~76</td> <td>25,193</td> <td>시계(상암동)</td> <td>자양동 759-1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변 경</td> <td>중 로</td> <td>2류</td> <td>15~20</td> <td>2,163</td> <td>연희동</td> <td>망원동 218-2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자연녹지지역, 도로 ○공람공고시 주민의견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	의안 번호	80	구 분	등 급	류 별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	변 경	대 로	1류	35~76	25,193	시계(상암동)	자양동 759-1		변 경	중 로	2류	15~20	2,163	연희동	망원동 218-2		<p>3. 주요요지 ○위 치 : 서초구 우면동 422-2 일대 ○내 용 · 면적 : 34,280㎡ → 76,040㎡(증 41,760㎡) · 도시계획사항 : 개발제한구역 · 공람공고증 의견접수 : 없음.</p>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 ○본 도시계획시설(광장) 결정은 서초구 우면동 422-2 일대 현재의 34,280㎡의 교통광장을 41,760㎡ 확장하여 76,040㎡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임. ○기존 광장은 '93.7.에 결정되었으나, 당시 이 광장과 연계된 우면산 남북간 터널건설 공사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구간에만 광장을 결정하였던 것이나, ○이번 광장의 결정은 '94.5.20. 완료된 터널공사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이 지역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가로 교통광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차로 교통처리를 위한 필요한 시설로 인정되어 (광장)변경결정안에 동의의견임.</p> <p>5. 심사결과 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 15%;">154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 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 2. 제안이유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○본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결정안은 강변북로와 연결된 동교로로 직접 차량이 진입되도록 일방향 연결도로를 설치함으로써 합정동로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</p>	의안 번호	154
의안 번호	8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등 급	류 별	폭원(m)	연장(m)	시 점	종 점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
변 경	대 로	1류	35~76	25,193	시계(상암동)	자양동 759-1																							
변 경	중 로	2류	15~20	2,163	연희동	망원동 218-2																							
의안 번호	154																												